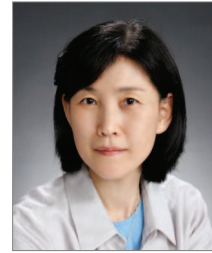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지방과 농촌의 지역 상황에서
본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대응방안

최 병 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1. 들어가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의 7개 급여 중 하나로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생계급여(80.65%)와 함께 주거급여(19.35%)를 지급하였다. 여기에서 주거급여는 각 가구에서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용과 관계없이 정해져서 주거지원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는 주거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입증함으로(윤희숙, 2013) 기존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의 복지제도를 통합형에서 개별 맞춤형 복지체제로 전환할 것을 2013년에 발표하였고, 주거급여 역시 본질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점에서 제도 전환을 제시하였다.

주거급여제도의 담당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24일 주거급여법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의 체계성을 확보하면서 통합적 시각에서 주거의 문제를 바라보지만, 주거 자체의 문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복지적 해결로 접근하려는 입장이다. 주거급여제도 시행은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천적이고 각론적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상황이 지역별로 매우 다른 상황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도 서로 다른 입장이므로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에 2015년 주거급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와 여건이 다른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주거급여제도 시행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응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주거급여제도와 지방정부

2.1 주거급여제도와 지방 재정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제3조에서는 주거급여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지역 행정을 언급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9조의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표1), 주거급여법 시행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월 지급액도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인상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기준은 기존의 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33%)이하 가구로 73만 가구였으나, 바뀐 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로 97만 가구로 예정되고 있다.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 주거급여 수급액도 기존의 약 8만원 수준에서 11만원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기존 제도 하에서 주거급여액의 비용을 파악해 보면, 2012년 주거급여액 7,042억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이 1,394억원으로 전체의 19.8%에 달하였다(장경석, 2014). 주거급여 제도의 개편은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예산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정부가 주거급여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바뀐 제도에서 늘어나는 비용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입장이다.

[표 1] 주거급여 개편안의 지급대상과 지원내용

구분	기존 주거급여	주거급여 개편안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3%(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 '13년 73만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97만 가구 (△ 24만가구)
지원 기준	전체 수급금액*의 19.35%가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및 유지수선비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 예정
입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주택개량 지원	좌동(주택개량 비중 확대)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13년 약 8만원	약 11만원
보장 기관	지방자치단체	좌동(주택조사는 전문기관 의뢰)

*전체수급금액=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자료출처: 장경석(2014). 주거급여법의 주요내용과 시행에 따른 과제. 이슈와 논점. 797호)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주거급여와 관련이 되는 복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10년간 지방재정 중 사회보장의 복지지출¹⁾이 8.2%에서 18.5%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8년까지 65세이상 고령 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증가로 지방도시의 복지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에 반해 지방의 농촌지역(군단위)은 인구규모 감소로 절대규모 면에서 복지수요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하능식, 신두섭, 2014). 하지만 개편된 주거급여의 내용에서 주택개량이 확대되고 농촌주거의 열악한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규모가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수요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는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2.2 주거급여제도와 지방 행정체계

주거급여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청조사, 확인조사, 조사 의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신청각하 및 중지 등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한다(주거급여법 제9조)라고 함에 따라, 주거급여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별도의 조직이나 기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기존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의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9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개편방안 발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 바우처 등 업무를 전담할 주거복지팀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거복지팀은 행정, 건축, 복지직 공무원 및 수탁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하되, 기존인력 및 제도 개편으로 인한 충원인력 활용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2014년 7-9월 주거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서울시를 제외하고 주거복지 행정조직의 신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고, 주택조사의 전담기관으로 LH가 지정되어 주거급여 시범사업의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전담기관을 두어 주거급여의 일을 추진한다고 하나,

1) 광의의 사회복지지는 사회개발비이며 협의의 사회복지지는 사회보장비로써 복지지출의 변화내역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 자료를 살펴본 것이다 (하능식, 신두섭(2014) 지방자치단체 복지 수요변화와 재정전망.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p 207-237).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표1에서와 같이 지급대상이 24만 가구가 증가하여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주거급여의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주거급여법에 명시되지 않은 주거급여의 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쉽게 기존의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일은 임대차 지급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확인 및 주택상태와 수준조사, 주택개보수의 일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가구에 대한 일련의 주거정보 관리 등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업무와는 다르게 주택을 중심으로 거주자의 안정된 삶과 향상된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편된 주거급여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달 체계상 반드시 주거전문가인 주거복지사²⁾ 인력을 배치하

여 지역의 주거상황을 고려한 주거급여제도 수행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주거급여제도와 지역의 주택상황

3.1 지역별 주택시장 차이 심화 우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보급율은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서울시는 2012년 97.3%이고, 경기도가 99.3%로 100% 주택보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도시는 102%의 주택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지방은 105~110%의 주택보급율을 나타내고 있다³⁾. 그러나 주택보급율에 비해 자가점유 비율을 2010년 주택통계조사결과에서 보면(표2), 전국적으로 자가점유 비율은 54.2%이고 도시에 해당하는 동지역은 50.3%, 지방 농촌인 읍면지역은 70.5%로 도시에 비해

[표 2] 주택점유형태(2010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2005년		2010년		증감 (2005~010)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국	계	15,887	100.0	17,339	100.0	1,452	9.1
	자가	8,828	55.6	9,390	54.2	562	6.3
	전세	3,557	22.4	3,766	21.7	209	5.8
	월세	2,728	17.2	3,490	20.1	762	27.9
	무상	490	3.1	464	2.7	-26	-5.3
동지역	계	12,744	100.0	14,031	100.0	1,287	10.0
	자가	6,575	51.6	7,057	50.3	482	7.3
	전세	3,235	25.4	3,405	24.3	170	5.2
	월세	2,622	20.6	3,097	22.1	475	18.1
	무상	311	2.4	293	2.1	-18	-5.7
읍면지역	계	3,142	100.0	3,308	100.0	166	5.2
	자가	2,252	71.7	2,332	70.5	80	3.5
	전세	320	10.2	360	10.9	40	12.5
	월세	389	12.4	392	11.9	3	0.7
	무상	179	5.7	170	5.1	-9	-4.5

2) 전문 주거복지의 인력으로 (사)한국주거학회에서는 민간 주거복지사 자격을 2013년부터 인증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의 민간등록자격(No. 2014-1368)을 취득하였다.

3) 2012년기준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주택보급율은 102%, 울산은 106%이며, 제주도는 103.2%이다(신주택보급률 <http://blog.naver.com/boojaman?Redirect=Log&logNo=80200331822> 검색일 2014. 6. 12)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농촌지역 거주자의 상당수는 자가인 내 집에 살고 있는 현실이어서 임차가구 지원의 주거급여제도가 농촌지역의 주거정책과는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농촌지역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21.5%를 차지하여 도시주택에 비해 숫적으로 열세이기 하지만, 전체 주택재고시장의 1/5을 차지하는 지방 농촌지역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거급여제도가 수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월세주택의 증가추이는 읍면의 농촌보다는 동지역의 도시가 크므로 도시에 치중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주택보급율이 100%를 초과한 현실에서 점유형태를 보면 도시지역에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마련을 하였어도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주택을 거주보다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1가구 2주택자가 지방 농촌보다 도시에 많은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의 주거급여제도는 도시 중심의 임대주택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이 제도는 투자목적의 주택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농촌보다 도시의 주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급여제도 실시에 따른 임대주택보유자의 혜택을 뒷받침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임대료 보조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지원의 30-70%가 귀속되었다(윤희숙, 2014)⁴⁾. 또한 스웨덴의 경우 사회주택 건축을 폐지하고 주거수당을 확대했을 때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임대료가 상승되었다고 한(Ditch et al., 2001(윤희숙, 2014에서 재인용)) 외국의 보고로 판단해 보면, 주거급여제도의 실시는 임대주택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는 지방 농촌의 경우 주택의 자산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주택시장의 비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급여제도의 실시에 앞서 지역별 주택가치의 차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혹은 주택가치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세제나 임대주택관리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임대료 현실의 지역별 상황 반영 검토

주거급여제도는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임차료 지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크므로, 지원 기준의 임대료를 4개 지역으로 차등화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가구별 임대료 상한선을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로 지역별 임차료 즉 월세를 파악한 것을 보면(최병숙 외, 2013), 시지역의 보증부 월세는 평균 27만36백원, 도농복합지역의 경우는 평균 21만79백원, 군이하 지역은 평균 16만98백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월세 상황은 3-4인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 및 경기인천, 광역시(1-3급지)의 주거급여제도로 지원되는 기준 임대료 상한선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주거의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3-4인가구 기준의 군 단위 월세 상황과 4급지 기준 임대료 상한선을 비교하면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에 비해 지방이나 농촌의 기준 임대료는 시장의 상황보다 낮게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는 중위소득 43%이하가구의 경우 임차료 지원으로 주거의 해결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4급지는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중소도시 및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이 모두 속하고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태진 연구팀(2012)에서는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주거급여의 지역 구분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경기 인천, 광역시가 대도시로 구분된 점이 있지만, 대도시이하 지역은 현재 제시된 주거급여제도의 대상지역 구분보다 현실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준 임대료의 지역은 4급지의 경우는 중소도시와

4) 영국의 경우 임대료 보조의 60%이상, 프랑스의 경우 70%이상, 핀란드의 경우 30-70% 이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임대인에게 귀속했다는 관찰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임대료바우처가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상승시켜 임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부담은 증가되었다고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임대료 보조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임대인에서 30-70%가 귀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윤희숙(2014)에서 재인용_ Gibbons and Manning, 2006; Frack, 2006; Sousin, 2002; Viren, 2013; Kangasharju, 2010).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농어촌으로 구체화하여 구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기준 임대료(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17만원	15만원	12만원	10만원
2인	20만원	17만원	14만원	11만원
3인	24만원	21만원	17만원	13만원
4인	28만원	24만원	19만원	15만원
5인	29만원	25만원	20만원	16만원
6인	34만원	29만원	24만원	19만원

(자료출처: 주거급여 개편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3. 11)

3.3 지역별 주거환경의 질적수준 차이

국가에서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는 지원하기 전 무엇보다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확보가 우선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적어도 최저주거기준이 상은 확보되어야 한다. 201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도시 9.7%, 농촌 14.5%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주거상황이 임차인지 자가인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이 저렴한 전월세로 주택시장에서 임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에 임차가구인 경우도 주택의 질적 수준이 최저주거기준 이상이 확보되도록 주택개량을 선지원하고, 질적수준이 확보된 후 임차가구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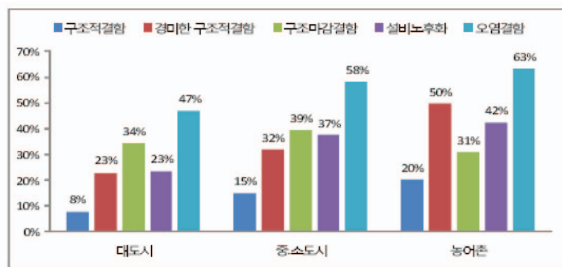
주거급여제도의 자가가구 지원은 수선유지의 주택개량이므로 명시하였고, 2015년 부터 실시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주거현물급여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과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장애인복지법 근거),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사업(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근거)에 준하여 실시될 것을 짐작할 수는 있다.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수급자의 가구를 대상으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 즉, 집수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거주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였다(박신영 외 2011; 최병숙 외, 2013).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 용자를 단독주택의 경우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거 안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주거급여제도의 수선유지 주택개량은 이러한 기존 사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법에 명시된 자가 지원은 수선유지인 점을 보면 기존의 지원금액이 200-300만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금액의 지원으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은 충분한 개량이 지원될 수 없을 것 같다.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1,349,081호이고 이러한 노후주택은 도시에 52.8% 농촌에 47.2% 존재한다(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근거). 노후주택은 단순한 수선유지로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소득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상태를 조사한 박신영 외(2011) 보고를 보면, 저소득층의 주택은 구조적결함, 경미한 구조적 결함, 구조마감결함, 설비노후화, 오염 등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세식화장실 및 주거시설의 보급수준도 일반주택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주택의 결함이 높게 나타나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그림1). 따라서 이러한 주택의 개량비용을 생각해 보면, 조적조 주택을 그린홈에 기준하여 개량하며 그 범위가 대보수에 해당할 경우 270,925원/㎡, 중보수일 경우 176,103원/㎡, 경보수일 경우 41,845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15평주택의 개량 비용을 산출해 보면, 대보수는 약 1,343만원, 중보수는 약 873만원, 경보수는 약 207만원이다. 그러므로 자가에 대한 수선유지의 주택개량지원은 기존의 200-300만원 지원금으로 해결하는 경미한 수준을 넘었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특히 열악한 농촌 주택의 경우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 설비 미흡 등의 문제를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주거안전과 편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가주택의 개량 지원에서 주거안전을 확보하는 구조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적 결함의 개량은 그 비용이 커지므로 지원 기준의 상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지방과 농촌지역은 대도시와는 매우 다른 지역적 주거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거주자는 상하수, 오폐수처리, 난방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있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쾌적하지 못한 상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방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춥게 지내면서도 난방비 과다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생활비 중 주거비 부담이 농촌 15.9%, 도시 14.7% (최병숙 외, 2013)), 상수공급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의 감수, 오폐수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건강할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인프라의 상황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 전체의 단열과 창호시설 개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에서 주택개량지원은 지역의 주거환경인프라 상황, 주택상태, 소득상황, 지역의 주택개량기술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비용지원의 차등화 및 대상선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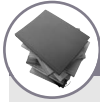
▲ [그림 1] 지역별 주택의 결함상태 발생 비율
(출처: 박신영 외(2011). 저소득층 주택상태 조사 및 개보수사업 추진 방안 연구. p39)

4. 제언

주택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주거급여제도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시행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여러 연구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부처의 이관에 따라 주택·주거의 전문부처로서 국토교통부가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시행 내용을 보완하면서 주거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역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여 전국 어디를 가도 같은 수준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의 실시로 도시에 살지 않고 지방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것이 보다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이 제도의 실시는 곤란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시장임대료가 높으면 지원 비용이 더 커지므로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지방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장점이 된다. 그리고 수급자의 경우 가족이 도시와 농촌에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도시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로 지원 혜택을 선택하면 농촌 거주자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거주하게 된다. 이에 주거급여제도의 실시도 지방과 농촌의 거주를 촉진시키고 도시, 지방, 농촌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가를 함께 검토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제도의 실시는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지방과 농촌의 주거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주택수준의 지역차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거급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 국민이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개량의 해결점과 주거환경의 인프라에 대한 해결점은 지방정부와의 분담보다는 국가의 주거수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지원에 더 비중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급여제도의 임차가구 지원 및 행정체계 구축 역시 지방정부의 부담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어떻게 보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제도가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주택시장 활성화 및 경제 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 1) 강신욱(2013). 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보건복지포럼. pp56-63.
- 2) 박신영 외(2011). 저소득층 주택상태 조사 및 개보수사업 추진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연구원. pp25-70, 173-187.
- 3) 윤희숙(2013). 주거급여 개편 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사회정책. 제20집 제4호. pp145-162.
- 4) 이태진 외(2012). 빈곤정책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80-197.
- 5) 이현석(2011).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보조제도의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년 8월. pp95-117.
- 6) 장경석(2014). 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따른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7) 최병숙 외(2013). 농촌 주택정책 전략과 실천과제 도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pp21-61.
- 8) 주거급여 개편,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_ 주거급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시범사업 지역공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3. 11.
- 9) 주거급여 개편방안_주택바우처 추진방안. 워크숍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2013. 9
- 10) 주거급여법(시행 2014. 10. 11, 법률 제 12333호, 2014. 1. 24. 제정). 법제처.